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98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상훈
안철수 · 김위상 · 구자근
최수진 · 김소희 · 이양수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 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치료위탁”을 “치료위탁(전문의학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의료기관에의 <u>치료위탁</u></p> <p>8. (생 략)</p> <p>② ~ ⑥ (생 략)</p>	<p>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치료위탁(전문 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다)</u></p> <p>8.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